

의정부지방법원 2021. 7. 20 선고 2021가단5416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 고 A영농조합법인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1. 7. 2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96. 4. 19. 접수 제408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 2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(청구취지 제1항의 ‘1996. 4. 18. 접수’는 ‘1996. 4. 19. 접수’의 오키임이 명백하므로, 이를 정정하여 주문에서는 ‘1996. 4. 19. 접수’로 기재하였다)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.
2. 적용법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(무변론판결)